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5. 21 선고 2022가단531511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 고 중소기업은행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
담당변호사 박일섭

피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아
변 론 종 결 2024. 3. 19.
판 결 선 고 2024. 5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2,139,699원과 그중 24,860,732원에 대하여 2023. 12. 29.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, 48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4호증, 을 1 내지 3, 5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1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B(“주채무자”)에 대출하였고,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다. 대출금 중 피고의 변제 등으로 남은 돈은 2023. 12. 28. 기준 아래와 같다. 원고는, 피고의 변제 주장 중 2023. 7. 20. 10,000,000원, 2023년 12월 말경 5,000,000원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.

순번	대출과목	대출 일자	약정 이율	대출금액	남은 원금	남은 이자	피고 연대보증한도
1	중소기업자금 대출(C)	2017- 10-10	연 11%	20,000,000원	12,860,732원	3,481,974원	24,000,000원 ▶ 21,600,000원 으로 변경
2	중소기업자금 대출(D)	2020- 03-31	연 11%	25,000,000원	12,000,000원	3,796,993원	30,000,000원 ▶ 26,400,000원 으로 변경
합계				45,000,000원	24,860,732원	7,278,967원	48,000,000원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 합계 32,139,699원과 그중 원금 24,860,732원에 대하여 2023. 12. 29.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, 연대보증한도 합계 48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원고가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대상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, 주채무자가 2023. 12. 27. 원고에게 3,624,519원을 이체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주채무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외에 2개의 대출금 채무와

신용카드대금채무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, 피고 주장 주식 인수 및 이체내역이 이 사건

대출금 채무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,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.

판사 김진성